

중앙살림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전북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해 중앙살림광장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살림광장"이란(이하 "광장"이라 한다) 전주중앙교회 부속 광장으로서 차도와 구분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신청자"란 자신의 명의로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

- ① 전주중앙교회당회장은(이하 "당회장"이라 한다)은 전주중앙교회 교인과 일반시민이 광장의 사용목적에 맞게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당회장은 광장 내에 설치된 시설물이 건립 목적에 맞게 이용

되고 그 원형이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운영)

- ① 당회장은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주중앙교회 기획국 살림광장팀(이하 "광장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전주중앙교회 당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광장팀에 그 업무를 일임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 ① 신청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청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살림광장 신청서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광장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광장팀은 제1항에 따라 광장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전주중앙교회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과도한 교통체증 및 안전문제의 유발이 예상될 경우에 담당 목회자와 기획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 ① 광장팀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전주중앙교회의 업무 및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전주중앙교회 행사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어린이·청소년 또는 여성 관련 행사

3.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③ 당회장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 통지)

① 광장팀은 광장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릴 수도 있다.

제8조(허가사항 변경)

광장팀은 제7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장팀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전주중앙교회 또는 전주시 등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광장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광장팀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사항이 사용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일이 지난 후에 미사용(우천관계 포함)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회장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신청자 및 사용자가 모두 만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2. 문화·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당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원상회복 등)

- ①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당회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의자대여등 물품사용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객이 사용한 화장실청소도 해야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5. 신청자가 법인일 경우 행사안전관련 보험을 필수로 들어야한다.
6. 음향사용 기준은 신고된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전주시 기준인 73데시벨을 넘지 않아야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8. 안전관리, 시설관리, 청결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 해야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안 광장사용료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사용시간	사용료	청소년	비고
기 본 사 용 료	주간	50,000원	무료	
기 타	1. 시간별로 1건의 행사에 대해서만 신고수리 한다. 2. 야간사용료(18:00~다음날 21:00)는 시간당 15,000원추가. 3.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다. ※ 사용료와 별개로 신청자는 청소를 책임져야 한다.			